

□ 부패 행위

유형	사례(예시)
증·수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◦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
향응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,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
공금횡령·유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◦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◦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
직권남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◦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
직무유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
비밀누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조사·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
문서 위·변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
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◦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◦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◦ 지체상금·이행강제금 미부과 등
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

□ 공익침해 행위

구분	주요 법령	사례(예시)
건강	의료법, 약사법 등	◦ 무면허 의료행위, 불법의료광고, 부자격자의 의약품 조제·판매,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
	식품위생법	◦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,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
	농수산물품질관리법	◦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
	학교급식법	◦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
안전	고압가스안전관리법	◦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·납품하는 행위
	건설기술관리법	◦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
	건축사법	◦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·시공감리를 하는 행위
	해사안전법	◦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
환경	폐기물관리법	◦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
	대기환경보전법	◦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
	악취방지법	◦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
	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	◦ 유해물질, 농약,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수출하는 행위
소비자 이익	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	◦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
	개인정보 보호법	◦ 정부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	소비자기본법	◦ 물품·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
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	◦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,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
공정경쟁	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	◦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, 가격차별 등 불공정 거래 행위
	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	◦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
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	채용절차법	◦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
	방위산업기술보호법	◦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기술을 취득,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
	중소기업 창원지원법	◦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
	방위사업법	◦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

□ 인권침해 행위

유형	사례(예시)
차별로 인한 인권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성별, 연령, 성정체성, 결혼지위,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◦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◦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가족상황,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◦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◦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◦ 집회·결사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◦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
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◦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◦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교육권·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◦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
□ 성희롱

구분	정의 및 사례
육체적 성희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- 입맞춤, 포옹,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- 가슴·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-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<p>예) 허리에 손 두르기과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,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, “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”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,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</p>
언어적 성희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,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- 음란한 농담,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(전화통화, 통신매체, 인터넷 매체(카톡, 블로그 등) 포함) -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-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-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-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<p>예) “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?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. 회사 다닐 맛 난다.”, “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?”, “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, 좀 부실하다.” 등</p>
시각적 성희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-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·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(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) -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<p>예)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,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, 원치 않는 링크를 계속하는 행위,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,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등</p>
기타 성희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<p>예)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, 좋아한다고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,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,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등</p>

□ 성폭력

구분	정의
<p>강간 (「형법」 제297조 등)</p>	<p>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(성기삽입)하는 것을 의미</p> <p>※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,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,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음</p>
<p>유사강간 (「형법」 제297조의 2 등)</p>	<p>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,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</p>
<p>강제추행 (「형법」 제298조 등)</p>	<p>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여 성욕을 자극, 흥분,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</p>
<p>준강간, 준강제추행 (「형법」 제299조 등)</p>	<p>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.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,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</p>
<p>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(「형법」 제303조제1항)</p>	<p>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</p>
<p>업무상 위계·위력에 의한 추행 (「성폭력처벌법」 제10조제1항)</p>	<p>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</p>
<p>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(「성폭력처벌법」 제12조)</p>	<p>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, 목욕탕·목욕실 또는 발한실(發汗室), 모유수유시설,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</p>
<p>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(「성폭력처벌법」 제13조)</p>	<p>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</p>
<p>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(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)</p>	<p>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하는 것을 의미</p> <p>※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 됨</p>